

##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### □ 개정이유

- 복지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 경기도 기획 12200-298(2000.3.8)에 의거 신규정원이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규정(안 제2조)

- 총 정 원 : 780명 → 785명 (증 5명)
  - 집행기관 : 762명 → 767명 (증 5명)
  - 의회사무기구 : 18명 → 18명

나. 사회복지직 정원 승인 내역

- 사회복지직 9급: 5명 순증

## □ 검토의견

### 가. 법령적합성

#### 지방자치법

**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**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이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(행정자치부 자제 12200-163호)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####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**제14조 (표준정원의 책정)**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·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 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하여야 한다.

## 나. 내용타당성

- 복지 행정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차원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5명 증원 하는 것이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임
- 현재 각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1명씩 활동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담당가구수가 과도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가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증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

※ 신규정원 배치 계획:문산,파주,조리,금촌1·2동 각1명씩 증원